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~

제 13 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 명 : 국유재산 무단 경작물 소유자 (성명 불상)

국유재산 :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-21 외 2필지 등 4건

귀하는 「국유재산법」 제7조를 위반하고 국유재산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-21 외 2필지 등 4건」을 무단으로 경작(두릅나무 식재 등 포함)하고, 이로 인한 미관저해 및 인근 지역주민의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

이는 국가의 소유권 행사, 철도시설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음은 물론, 방치할 경우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바, 「국유재산법」 제 74조, 제82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17일(수)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대집행 방법
①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218-21 외 2필지 ②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183-6 외 5필지 ③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185-19 외 3필지 ④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185-26 외 5필지	무단 경작물 (두릅나무 등 포함)	인력, 장비, 차량 등을 동원하여 철거대상 농작물(두릅나무 등 포함) 일체를 강제 철거 (국가철도공단)

2024. 7. 3.

국가철도공단 총청본부장

